평가지표 28	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.	점수
배설관리		2

배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..

평가기준		평가
1	신규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파악한다.	
	· 신규 수급자: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집중배설관찰 기록표 작성 3일(수면시간포함 연속 72시간)동안 매 시간 섭취량, 대·소변 여부,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기록 · 72시간 관찰결과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	
2	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	기록
	·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 교환	

기준	점수	채점기준	
1	1	평가기준을 충족함	
2	15	평가기준을 충족함	

- ▣ 지표적용기간: 2022.1월 ~ 2025년 평가일
- 기준①번의 '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날까지 반영'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
### ■ 확인방법

# 기준①

- 집중배설관찰기록은 3일 동안(연속 72시간, 수면시간 포함) 매시간 배설상태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.
- 배설양상 파악 후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중배설기록지 작성완료일의 다음날까지 반영하여야 인정함
- 신규 수급자가 입소 후 **14**일차까지 외박(입원 등)하여 집중배설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복귀 즉시 집중배설관찰을 실시 및 기록한다.

■ 신규 수급자가 혈액투석으로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아 연속 **72**시간 집중배설관찰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, 병원진료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다.(작성안내) 집중배설관찰 **72**시간 진행하되, 병원진료시간은 사유작성 후 공란- 사유작성 예시: 혈액투석 **07**:00~14:00

### ▶ 2025년 평가.

2021년	2025년	디 사버라 힘이 된지 아그 어머미 힘이
대·소변량	대•소변 여부	대•소변량 확인 하지 않고 여부만 확인

### 기준②

-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.
- 기저귀를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.
- 기저귀 교체 시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기록하여야 함
-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- ▶ 케어포 적용(기저귀 교체)
- 1) 기저귀 착용 (욕구사정 > 배설관리-기저귀)
- 2) 요양급여(2-1) -급여제공기록지 화장실 이용하기- 기저귀 교체기록

필수항목 기저귀교체, 교체시간	배설확인 후 교체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기관의 편의를 위한 "확인 "기능 추가 - 필요시 사용

- 수급자의 기저귀 교체여부를 확인 한 시간 (배설없음, 기저귀 교체하지 않음)

기관의 편의를 위한 "기저귀 교체 - 확인 담당자"기능 - 필요시 사용

- 기저귀 교체 종사자 필수 항목 아님.

# ▶ 평가지표 배설관리 (2025년 삭제 내용)

07/71	파 메르트더 ( <b>2023</b> 년 구세 네용)	
	2021	2025
평가기준	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한다. ·모든 수급자: 매일 배설상태 확인	
확인사항	■ 매일 배설상태 확인은 소변과 대변의 배설 횟수 기록을 확인한다.	
케어포	급여기록지-화장이용하기- 대소변 횟수 기록	삭제

#### ▶ 케어포 적용

# 케어포 배설관찰기록 삭제 또는 필요시로 (설정) 디폴트 보이게

■ 배설 관찰기록 전일 자료 조회		전일 자료 조회	▶소변량 기록(유치도뇨관) - 필요시	
	구분	횟수		
	대변	<b>–</b> 1 <b>+</b>	1-3.기초평가 관리 〉 욕구사정 〉 10.간호평가	
	소변	<b>-</b> 4 <b>+</b>	유치도뇨관, 방광루, 요루 항목이 체크된 수급자가 기 록 대상입니다.	
	설사	_ o +		

2025년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Q81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.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?

○ 입소 당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**14**일 이내 작성한 등급외 입소자가 입소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재작성하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.

○ 다만, 수급자의 배설상태 등이 최초 입소 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하여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2025년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Q82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?

-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.
- 따라서,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**14**일 이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.

2025년	  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
Q83	여부를 기입해야 하나요?

○ 평가지표28 배설관리 기준①의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72시간동안 매 시간 섭취 및 대소변량, 기저귀 및 옷 교환(옷에 배설 실수한 경우)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. 집중배설관찰기록표의 작성은 신규 수급자의 배설관리를 위한 상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매시간 기록하여야하며, 기저귀 미이용 시 시간대별 배설여부만 기록해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※ '24년도까지는 대소변량으로 확인함

2025년
084

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?

○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급여제공기록지 화장실이용하기(기저귀 교환)란에 기입하거나 기관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

○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